

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3. 10. 8 조례 제1960호
 일부개정 2015. 11. 5 조례 제2131호(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
 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 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
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 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 일부개정 2023. 11. 10 조례 제301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 신중년층 인생
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 일부
 개정을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
 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경로식당”이란 저소득 노인 1일 평균 20인 이상 주5회 이상 음식물을 제
 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.
2. “운영자”란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경로식당 운영에 대
 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종사자”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(자원봉사자 등은 제
 외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계획수립)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
 록 매년 1월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
 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영) ① 경로식당은 주5회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, 공휴일 급식 필
 요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「국민기초생
 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을
 원칙으로 하되, 기타 사유로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(독거노
 인)도 포함하며,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
 비를 받고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1. 5, 2023. 11. 10>

③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자의 책무)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, 철저한 위생관리,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6조(위생지도 및 지원)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,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관리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.

제7조(예산지원)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 9. 26>

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외에 사업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8조(보조금 환수)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.

1.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3.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
5.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
제9조(노인급식위원회) ① 시장은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

하기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,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
②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원대상, 방법 등 경로식당 전반에 관한 사항
2. 경로식당 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경로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경로식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5. 11. 5 조례 제2131호,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
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
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3. 11. 10 조례 제301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
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
일부개정을 위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